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2가단5212764(본소), 2023가단5142268(반소) 판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원용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인

변론 종결2023. 5. 30.

판결 선고2023. 7.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주식회사 C가 2020. 1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 제2406호로 공탁한 1,445,237,579원 중 3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반소피고(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게 원고가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피고, E 주식회사(구 상호는 F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G 주식회사(구 상호는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는 각 물품대금 채권을1),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D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1,445,237,579원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집행대상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D는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집행대상채권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이하 원고가 양도받은 순번1의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1	원고	2020. 5. 4.	2020. 5. 7.	C에 대한 채권 중 3억 원
2	G	2020. 5. 4.	2020. 5. 7.	C에 대한 채권 중 893,994,292원
3	G	2019. 6. 27.	2020. 5. 25.	C에 대한 채권 중 22억 원

라. D의 채권자들인 피고, E, G, I, 대한민국은 이 사건 집행대상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등을 받았고, 위 결정은 제3채무자인 C에게 각 송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202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8224 채권가압류, 700,000,000원
2	E	2020.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257 채권가압류, 100,000,000원
3	I	202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11248 채권가압류 300,000,000원
4	대한민국	2020. 11. 2.	채납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147,233,150원
5	피고	2020.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127596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401,428,042원

마. C는 2020. 12. 3. 'C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가 경합되었고,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에 근거하여 피공탁자를 D, 원고, G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 제2406호로 1,445,237,579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J로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가 이 사건 집행대상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바, 배당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D에 대하여 가지는 1,617,475,684원의 어음금채권(이하 '이 사건 어음금채권'이라 하고, 그 어음을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의 변제를 위하여 2000. 5. 4. 이 사건 집행대상채권 중 3억 원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올라 1호증(지급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12. 2.부터 2020. 3. 3.까지 사이에 이미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G에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대한 원고의 출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올라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2.부터 2020. 3. 3.까지 사이에 이미 G에게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0. 5. 4. 이 사건 어음금채권 또는 그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 내지 3, 7, 8호증, 올라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어음은 2000. 5. 4.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한 점, ② G은 2000. 6.경 D을 채무자로 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20차전1000 지급명령, 올라 1호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사실, ③ G은 D, E, I, 원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1,084,592,647원의 출급청구권이 G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0031), 위 소송에서 G은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우선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다가 어음이 부도가 남에 따라 다시 반환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2000. 5. 4. 당시에는 원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채권 또는 그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집행대상채권 중 3억 원의 채권을 유효하게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 1,445,237,579원 중 3억 원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채권양도는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D에 대하여 2,101,428,042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는 채권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할 것을

구한다.

나.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2) 갑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G은 2021. 1. 6. 원고,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앞서 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0031)의 소장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의 존재 및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3억 원이 배당됨을 전제로 하여 청구금액을 산정한 사실, ② 위 소송에서 E은 반소로 D가 G에게 한 채권양도(기초사실 다.항 표의 순번 2, 3의 각 채권양도)가 각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 13. 반소청구에 대하여 'D가 2000. 5. 4. G에게 한 채권양도(기초사실 다.항의 표 순번 2의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2022. 1.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22. 1. 18.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존재하였고,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D가 무자력상태여서 이 사건 채권양도로 인하여 D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2. 1. 1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4. 24. 제기된 이 사건 반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근영

별지

1) 원고는 피고, D, E, G, I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법원의 2023. 5. 31.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